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27일

군산시 조례 제 1890 호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27일

군산시 조례 제 1891 호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영장·군산실내배드민턴장·  
군산야외수영장 이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제2조(「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의 개정)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군산시 해양 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별표1]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용료 (부가세별도)	비 고
1회 입장	성 인	2,000	<u>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u>
	청소년·군인	1,500	
	어린이·경노	1,000	
회 원	성 인	40,000	
	청소년·군인	30,000	
	어린이·경노	20,000	

- 회원이라함은 1개월이상 입장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3개월 이상 회원에게는 월회비의 20%, 6개월은 25%, 12개월은 30%의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 20명이상 단체이용시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 제12조제1항제1호~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5%를 감면할 수 있다
-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 이용료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 회원이용시간은 1일 1회에 한하며 2시간 이내로 한다.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

감면 비율	대상시설	감면가능 경우
전액 감면	수영장 강의실	1. 군산시가 주최 및 후원하는 경기 및 행사 시
100분의 50 감면	수영장 강의실 수상레저 기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안전교육 12.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세대원 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분의 20 감면	수영장 강의실 수상레저 기구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27일

군산시 조례 제 1892 호

###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소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 4. “어린이놀이터”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 5. “관리주체”란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시장을 말한다.
- 6. “공원지킴이”란 어린이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리할 것을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각종 시설물 점검·유지
- 2. 공원지킴이 활동내용
- 3.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위의 제한)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서 금지된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인건비를 제외한 공원유지관리비용)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활동에 준한다.

1. 쓰레기 및 위험물질 제거
2. 공원바닥 및 시설물 청소
3. 시설물 육안점검
4. 공원 이용질서 계도
5. 그 밖의 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27일

군산시 조례 제 1893 호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로, “조직”을 “구성”으로 한다.

제2조 중 “함”을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조직)”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이 위촉한다”를 “한다.)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 또는 개인 중”을 “제4항의 단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단원은”을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으로, “제출”을 “시장에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제6항(중전의 제5항) 단서 중 “**단장**” 을 “**시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 이라 한다)의 단원은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 단원 중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 선출한다.

제5조의 제목 “(**임원 및 임무 등**)” 을 “(**임원의 직무 및 임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무**” 를 “**직무**” 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해임**)” 을 “(**해임 및 해촉**)”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단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의 부정**” 을 “**부정**” 으로, “**경우**” 를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을 “**해임**”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다.**” 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장이**” 를 “**시장이**” 로, “**등**” 을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장 또는 단원**” 을 “**회장 또는 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단장**” 을 “**회장**”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소집**)” 을 “(**소집 등**)”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단원이**” 를 “**단원은**” 으로,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 를 “**수행한 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를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8월 말**” 을 “**9월 말**” 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를 “**비용**”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단장은 제9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해임조치**” 를 “**해임 및 해촉**”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 서식]

# 출 입 증

(제12조관련)

**출 입 증**

사진  
3×4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원**

5.5cm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 . . .

**군 산 시 장**

7.7cm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 ], 장해 [ ], 장제 [ ], 유족 [ ] 재해보상청구서  
(제10조2관련)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p>제출서류</p>	<p>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p>	<p>수수료 없음</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요양·장애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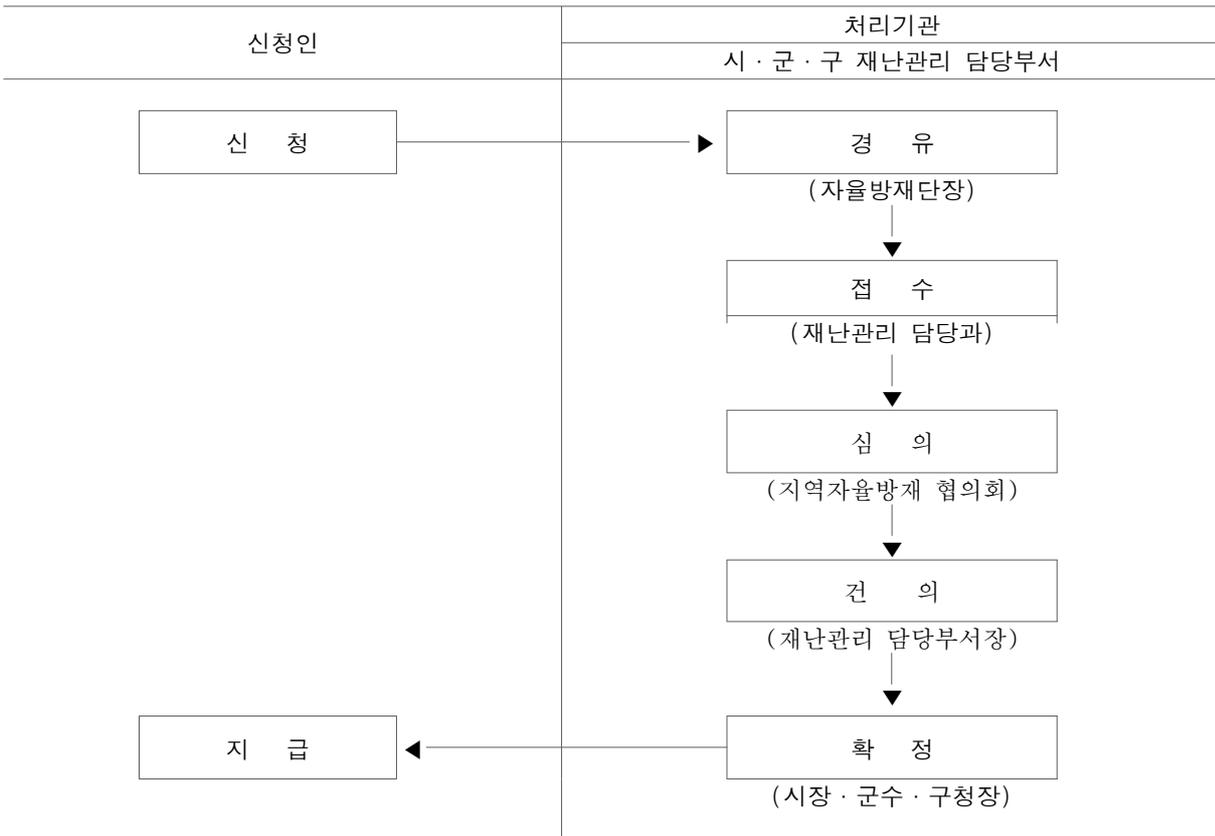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27일

군산시 조례 제 1894 호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5 제1호나목 중 “주거 밀집지역” 이란 10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 을 “주거지역” 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있는 지역” 으로, “대한” 을 “대한 호수” 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본문 중 “주거 밀집지역의” 를 “주거지역” 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군산시민” 을 “위 나목에 한하여 군산시민” 으로, “으로” 를 “이 소유한 토지(5년 이상 소유)에” 로, “완화하며, 본인 소유토지(5년 이상 소유)에 신청할 경우 50%완화 적용.(단, 해당가구 80%이상” 을 “완화 적용. (단, 사업부지 인근 실거주 가구 100%”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27일

군산시 조례 제 1895 호

##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 및 군수·구청장에게” 를 “기관에” 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 을 “법 제19조제1항”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27일

군산시 조례 제 1896 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수입  
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27일

군산시 조례 제 1897 호

##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군산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산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시장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군산시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군산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군산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주소정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된 주소 정보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군산시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27일

군산시 조례 제 1898 호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 한다.” 를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을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27일

군산시 조례 제 1899 호

##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읍·면지역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읍·면지역의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다움복원 등)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 기반시설 및 지역경관 개선시설 등을 말한다.
6. “추진위원회”란 시·군 전담부서, 주민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7.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8.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9.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10.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제외 최소 5인 이상)를 말한다.
11.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2. “농촌협약 위원회” 이란 시 및 도 전담조직, 민간전문가(PM단), 지역 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 3.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4. 주민과 행정 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
-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지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4.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주민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주민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주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주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조성사업
2.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3.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우선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신청)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합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사업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검토)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신청서를 받으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평가와 포상) ① 시장은 사업을 분석·평가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주민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3장 농촌협약 제도

제16조(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7조(협약 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 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 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 과 “행정협의회” 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8조(농촌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역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 라 한다) 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문·심의한다.

- 1.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3. 마을만들기 사업 및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4. 마을만들기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자문
- 6.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과장 및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주민(운영)위원장

3.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등 지원)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5조(설치)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3.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4.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6.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7.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포럼, 역량강화사업
8.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견학 지원
9.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10.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발굴 및 일자리 연계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지원센터의 구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시장이 정한다.

- ②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한다.
- ③ 시장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28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인계를 위탁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4.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3조(운영위원회 등 구성) ①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법인(이하 “운영위원회 등”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등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운영위원회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제34조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 지역의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른다.

제36조(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운영관리에 특별하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개발사업 시설물의 일상적인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공과금, 관리 소홀로 인한 과태료 등의 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위해 권역발전기금조성 등 권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전부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 관리유지비(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지출 경비가 수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보수를 직접 시행한다.

제41조(재정지원의 방법) 시장은 제40조에 따라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2조(지도·감독) ① 제35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 등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3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 마을만들기 사업신청서

마을현황	소재지	○○○읍·면 ○○○리 ○○○마을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참여현황	참여인원	대표자 외 명	참여 가구수	가구
신청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추진 재원 (단위:천원)	계	시 보조금	기 타(모든 재원 기재)		
			주민 부담	마을 기금	주민참여, 기부금 등

군산시에서 공모한 『0000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 대표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마을 결의서, 주민총회 회의록, 총회참여자 명단 첨부 (별지제2호서식)
2. 주민참여 현황 (별지제3호서식)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별지제4호서식)
4. 마을단체 증명서류(법인등기, 고유번호증, 정관 등)

[별지제2호서식]

## 0 0 마을 결의서

우리 마을 주민들은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0000년 마을만들기 사업』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를 활용하여 지역 활력화를 이루고,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마을 주민들은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한데 모아 『0000년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을 결의합니다.

년      월      일

마을 추진위원장	(서명/인)
위원	(서명/인)

- 붙임 1. 주민총회 회의록 1부  
 2. 주민총회 참여자 명단 1부.

※ 주민 총회 참여자 명단 필수 기재사항이며, 가구별로 성명, 주소, 서명날인 할 것

## 00마을 주민총회 회의록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 안 건 :
- 결과요지
  - 
  -
- 회의내용(2~3장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 총 회 사 진 >

< 총 회 사 진 >

< 총 회 사 진 >





[별지제4호서식]

#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서

##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기간 : . . . ~ . . .
- 소요예산 : 천원( 시비 : , 자부담 : )

## 2. 마을현황

- 가구 수 : 00호(농가 00호, 비농가 00호) ※사업참여가구 : 00호
- 인구 수 : 00명(남 00명, 여 00명) ※귀농귀촌자 현황: 00가구 00명
- 자원현황
  - 전통문화
  - 관광자원
  - 농특산품

## 3. 마을사업 추진실적

- (예시) 0000년 생생마을 만들기

## 4. 마을리더 현황

연번	성명	직책	연락처 (핸드폰)	교육이수실적	비고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총무			

※ 추진위원장 포함 최소 3인 필수 선정

## 5. 사업목적

- 
- 
-

**6. 주요사업내용**

※ 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사용

- 
- 
- 

**7. 세부내역**

구분	세부사업	산출기초	총사업비(천원)			비 고
			총계	시비	자부담	
총 계						
H/W	○					
	○					
	○					
S/W	○					
	○					

**8. 기대효과**

- 
- 
- 

**9.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

- 
-

# 사 업 위 치 도

위치도

현장사진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27일

군산시 규칙 제 754 호

##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전부개정규칙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군산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역량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성과관리**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한다.

제4조(성과관리의 운영)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성과관리 대상부서 및 기관(이하 “대상부서”라 한다)은 시의 비전, 분야별로 다음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대상부서의 임무와 전략목표 그리고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전략과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와 전략과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대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 매년 1월 말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대상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간점검 실시 후 5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 제3장 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4.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
7.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점검은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해 2월에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9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민만족도 평가) 시장은 주요사업, 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할 때에는 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성과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시스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주관 부서에서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장 성과평가위원회

제15조(성과평가위원회)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선정,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초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대상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대상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1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3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5장 평가 결과의 활용

제25조(평가결과의 활용)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모범사례 확산 등)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군산시 자체평가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군산시 성과평가위원회로 본다.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27일

군산시 규칙 제 755 호

##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10세대**” 를 “**35세대**”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공사주민 분담금액이 작은**” 을 “**투자비용 대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는**”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100미터당 10세대**” 를 “**100m당 35세대**”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0일**” 을 “**60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일**” 을 “**10일**” 로 한다.

제10조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를 “**도시가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27일

군산시 규칙 제 756 호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군산시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를 “**군산시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21-137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23.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12건, 변경 2건, 폐지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1. 9.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역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547-9	전라북도 군산시 원 당길 34-11 (미룡 동)	20210917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 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25-2	전라북도 군산시 옥 산면 옥교길 20	20210917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 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27-8	전라북도 군산시 설 림5길 60-21 (소룡 동)	20210917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 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내초동 10-1	전라북도 군산시 내초로 61 (내초동)	20210917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 여	
건물 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칠 성2길 28 (미룡동)		20210916	건물번호 폐 지후에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 로명 부여	석화 중기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855-5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2길 28 (미룡 동)	20210916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 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명산동 3-1, 신창 동 17	전라북도 군산시 우체통거리1길 3-1 (명산동)	20210914	건물신축	20190723	거석길을 우체통거 리1길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건물 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5길 60-21 (소룡동)		20210914	건물번호 폐 지후에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 로명 부여	정화 주택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492-1	전라북도 군산시 회 현면 대위로 511	20210914	건물신축	20100125	회현면 대위제 옆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 역명칭 인용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493-1	전라북도 군산시 회 현면 대위로 515-3	20210914	건물신축	20100125	회현면 대위제 옆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 역명칭 인용	
건물 번호 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신구1길 46	전라북도 군산시 서 수면 신구1길 46	20110729	건물신축	20100125	신촌과 구산마을의 합 하여 신구 마을로 명칭	
건물 번호 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신구1길 46	전라북도 군산시 서 수면 신구1길 48	20210910	건물번호 분 할	20100125	신촌과 구산마을의 합 하여 신구 마을로 명칭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430-1	전라북도 군산시 성 산면 동군산로 55-22	20210910	건물신축	20100125	군산시 동쪽을 관통 하는 도로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730-1	전라북도 군산시 옥 구읍 남척동길 35	20210910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 여	
건물 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신복길 33		20210906	건물번호 폐 지 후에 건 물신축	20100125	죽산리 신복마을 소 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137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로 552	20210907	건물신축	20100125	나포면 서포,주곡,옥 근리에 십자들이 존재 하여 지역명칭 인용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86-40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신복길 33	20210907	건물신축	20100125	죽산리 신복마을 소 재	

군산시 고시 제2021-139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오식도동 66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일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오식도동 66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나. 명 칭 :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부지면적 : 51,596.6㎡
  - 나. 건축규모 : 1동/지상1~지상3층, 건축면적 1,373.87㎡, 연면적 3,018.71㎡

구분	층별	건축물 세부현황		비고
		면적(㎡)	건축물 용도	
1동	지상1층	755.25	공원관리사무실, 화장실, 필로티 등	필로티 주차장 618.62㎡ 제외
	지상2층	1,373.87	작은도서관, 소회의실, 다목적구장, 체력단련실, 락커룸/샤워실, 창고, 준비실/방송실, 화장실 등	
	지상3층	889.59	대회의실,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공원관리사무실, 화장실, 물탱크실, 기계실, 전기실 등	
총 연면적		3,018.71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산업혁신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6. 08.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No	읍면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금회시행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군산시 오식도동	661	공	51,596.6	2,932.1	군산시	시청로 17	

7. 관계도서 : 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1-142호

## 은파관광지(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9월 27일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은파관광지 (유원지)	군산시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옥구읍 일원	1,764,095	1,764,095	-

- 은파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조서
  - 가. 사업의 개요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표
  - 다.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라.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조서
  - 마. 지형도면고시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표
  - 다.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라.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 마.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바. 지형도면고시도

## 은파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조서

### 가. 사업의 개요

- 관광지의 명칭 : 은파관광지
- 관광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옥구읍 일원
- 관광지의 면적 : 1,764,095m<sup>2</sup>
-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사유
  - 은파관광지 내 복합 다기능적 상가 수요 충족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통한 상가시설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매점, 일반음식점으로 국한된 시설명을 관광지 조성계획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도의 상가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사업기간 : 1985 ~ 2025. 12. 31.
- 투자사업비 : 117,606백만원
-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표

구 분	면 적 (㎡)				건축연면적(㎡)			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구 성 비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합 계	1,764,095	1,764,095	-	100.00	106,053	106,053	-		
공공편의 시설지구	173,758	173,758	-	9.85	1,049	1,049	-		
숙박 시설지구	54,196	54,196	-	3.07	83,743	83,743	-		
상가 시설지구	47,249	47,249	-	2.68	18,709	18,709	-	종합매점 일반음식점1 일반음식점2 일반음식점3 일반음식점4 일반음식점5 일반음식점6	상가4 상가1 상가2 상가3 상가4 상가5 상가4
운동·오락 시설지구	31,043	31,043	-	1.76	382	382	-		
휴양·문화 시설지구	183,313	183,313	-	10.39	2,170	2,170	-		
기타 시설지구	1,274,536	1,274,536	-	72.25	-	-	-		

다.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시설 지구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1,764,095	1,764,095	-	28,650	28,650	-	106,053	106,053	-	
공공편의시설지구				173,758	173,758	-	964	964	-	1,049	1,049	-	
공공편의	1	종합관리사무소		95	95	-	85	85	-	170	170	-	기조성
공공편의	2	주차장1		12,338	12,338	-	100	100	-	100	100	-	기조성
공공편의	3	주차장2		1,453	1,453	-	100	100	-	100	100	-	기조성
공공편의	4	주차장3		7,246	7,246	-	-	-	-	-	-	-	
공공편의	5	광장1		7,576	7,576	-	-	-	-	-	-	-	기조성
공공편의	6	광장2		4,229	4,229	-	-	-	-	-	-	-	기조성
공공편의	7	광장3		857	857	-	-	-	-	-	-	-	
공공편의	8	광장4		3,620	3,620	-	228	228	-	228	228	-	기조성
공공편의	9	광장5		1,908	1,908	-	-	-	-	-	-	-	기조성
공공편의	10	잔디광장		3,283	3,283	-	-	-	-	-	-	-	기조성
공공편의	11	화장실1		253	253	-	100	100	-	100	100	-	기조성
공공편의	12	화장실2		286	286	-	100	100	-	100	100	-	기조성
공공편의	13	화장실3		95	95	-	40	40	-	40	40	-	
공공편의	14	양수장		2,920	2,920	-	159	159	-	159	159	-	기조성
공공편의	15	오수펌프장		100	100	-	52	52	-	52	52	-	기조성
공공편의	16	도로		127,499	127,499	-	-	-	-	-	-	-	기조성
공공편의	17	교량(물빛다리)		-	-	-	-	-	-	-	-	-	기조성
공공편의	56	수변산책로		-	-	-	-	-	-	-	-	-	
숙박시설지구				54,196	54,196	-	16,432	16,432	-	83,743	83,743	-	
숙박	18	호텔1		15,835	15,835	-	4,750	4,750	-	24,360	24,360	-	기조성
숙박	19	호텔 및 생활숙박시설		38,361	38,361	-	11,682	11,682	-	59,383	59,383	-	
상가시설지구				47,249	47,249	-	9,472	9,472	-	18,709	18,709	-	
상가	-	종합매점	-	1,143	-	감)1,143	229	-	감)229	458	-	감)458	
상가	20	일반음식점1	상가1	982	982	-	165	165	-	330	330	-	기조성
상가	21	일반음식점2	상가2	14,962	14,962	-	2,717	2,717	-	5,434	5,434	-	기조성
상가	22	일반음식점3	상가3	8,393	8,393	-	1,457	1,457	-	2,910	2,910	-	기조성
상가	23	일반음식점4	상가4	7,263	10,412	증)3,149	2,294	2,753	증)459	4,587	5,275	증)688	기조성
상가	24	일반음식점5	상가5	12,500	12,500	-	2,380	2,380	-	4,760	4,760	-	기조성
상가	-	일반음식점6	-	2,006	-	감)2,006	230	-	감)230	230	-	감)230	

시설 지구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운동·오락시설지구			31,043	31,043	-	382	382	-	382	382	-	
운동·오락	25	숲체험놀이터	5,425	5,425	-	-	-	-	-	-	-	
운동·오락	26	다목적운동장1	6,360	6,360	-	-	-	-	-	-	-	기조성
운동·오락	27	다목적운동장2	3,742	3,742	-	-	-	-	-	-	-	
운동·오락	28	체력단련장1	40	40	-	-	-	-	-	-	-	
운동·오락	29	체력단련장2	40	40	-	-	-	-	-	-	-	
운동·오락	30	체력단련장3	40	40	-	-	-	-	-	-	-	
운동·오락	31	체력단련장4	40	40	-	-	-	-	-	-	-	
운동·오락	32	체력단련장5	40	40	-	-	-	-	-	-	-	
운동·오락	33	커뮤니티회랑	15,316	15,316	-	382	382	-	382	382	-	
휴양·문화시설지구			183,313	183,313	-	1,400	1,400	-	2,170	2,170	-	
휴양·문화	34	야외갤러리	15,815	15,815	-	380	380	-	700	700	-	
휴양·문화	35	계류장1	95	95	-	-	-	-	-	-	-	기조성
휴양·문화	36	계류장2	661	661	-	-	-	-	-	-	-	기조성
휴양·문화	37	자전거문화센터	9,007	9,007	-	472	472	-	742	742	-	기조성
휴양·문화	38	숲체험장	21,375	21,375	-	160	160	-	260	260	-	
휴양·문화	39	휴게쉼터	2,662	2,662	-	-	-	-	-	-	-	
휴양·문화	40	전망휴게쉼터	20,668	20,668	-	-	-	-	-	-	-	
휴양·문화	41	전망대	985	985	-	80	80	-	160	160	-	
휴양·문화	42	생태습지1	25,671	25,671	-	-	-	-	-	-	-	기조성
휴양·문화	43	생태습지2	7,633	7,633	-	-	-	-	-	-	-	
휴양·문화	44	생태습지3	5,045	5,045	-	-	-	-	-	-	-	
휴양·문화	45	역세원	11,326	11,326	-	-	-	-	-	-	-	
휴양·문화	46	편백나무쉼터	10,771	10,771	-	-	-	-	-	-	-	
휴양·문화	47	조경휴게소1	36,878	36,878	-	108	108	-	108	108	-	
휴양·문화	48	조경휴게소2	3,376	3,376	-	-	-	-	-	-	-	
휴양·문화	49	숲속산책쉼터1	1,285	1,285	-	-	-	-	-	-	-	
휴양·문화	50	숲속산책쉼터2	3,147	3,147	-	-	-	-	-	-	-	
휴양·문화	51	야외공연장	6,913	6,913	-	200	200	-	200	200	-	기조성
기타시설지구			1,274,536	1,274,536	-	-	-	-	-	-	-	
기타	52	상징탑	107	107	-	-	-	-	-	-	-	기조성
기타	53	고사분수	-	-	-	-	-	-	-	-	-	기조성
기타	54	녹지	1,002,723	1,002,723	-	-	-	-	-	-	-	
기타	55	유지	271,706	271,706	-	-	-	-	-	-	-	

라.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조서

시설지구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대표번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b>총 계</b>						1,764,095	1,764,095	-	28,650	28,650	-	106,053	106,053	-	-
<b>공공편의시설지구</b>						173,758	173,758	-	964	964	-	1,049	1,049	-	-
공공편의시설지구	1	1	종합관리사무소	종합관리사무소	나운동 1234-20잡	95	95	-	85	85	-	170	170	-	2층
	1-1	1-1	본건물	본건물	나운동 1234-20잡	95	95	-	85	85	-	170	170	-	2층
	2	2	주차장1	주차장1	나운동 1223-4유	12,338	12,338	-	100	100	-	100	100	-	1층
	2-1	2-1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1223-4유	12,243	12,243	-	-	-	-	-	-	-	-
	2-2	2-2	화장실	화장실	나운동 1223-5유	95	95	-	100	100	-	100	100	-	1층
	3	3	주차장2	주차장2	미룡동 산262-2도	1,453	1,453	-	100	100	-	100	100	-	1층
	3-1	3-1	주차장	주차장	미룡동 산262-2도	1,353	1,353	-	-	-	-	-	-	-	-
	3-2	3-2	화장실 및 매점	화장실 및 매점	미룡동 산262-2도	100	100	-	100	100	-	100	100	-	1층
	4	4	주차장3	주차장3	나운동 1995-72전	7,246	7,246	-	-	-	-	-	-	-	-
	5	5	광장1	광장1	나운동 1223-4유	7,576	7,576	-	-	-	-	-	-	-	-
	6	6	광장2	광장2	나운동 1234-7잡	4,229	4,229	-	-	-	-	-	-	-	-
	6-1	6-1	잔치및산책로	잔치및산책로	나운동 1234-7잡	2,058	2,058	-	-	-	-	-	-	-	-
	6-2	6-2	조경지	조경지	나운동 1234-7잡	2,171	2,171	-	-	-	-	-	-	-	-
	7	7	광장3	광장3	나운동 1196-7유	857	857	-	-	-	-	-	-	-	-
	8	8	광장4	광장4	미룡동 48-8유	3,620	3,620	-	228	228	-	228	228	-	1층
	8-1	8-1	중앙광장	중앙광장	미룡동 49-39잡	2,461	2,461	-	-	-	-	-	-	-	-
	8-2	8-2	공연무대 및 화장실	공연무대 및 화장실	미룡동 48-8유	529	529	-	228	228	-	228	228	-	1층
	8-3	8-3	목재데크	목재데크	미룡동 48-42유	630	630	-	-	-	-	-	-	-	-
	9	9	광장5	광장5	나운동 산243-2입	1,908	1,908	-	-	-	-	-	-	-	-
	10	10	잔디광장	잔디광장	미룡동 49-47잡	3,283	3,283	-	-	-	-	-	-	-	-
	10-1	10-1	잔디광장	잔디광장	미룡동 49-47잡	772	772	-	-	-	-	-	-	-	-
	10-2	10-2	기념탑광장	기념탑광장	미룡동 53-15잡	1,905	1,905	-	-	-	-	-	-	-	-
	10-3	10-3	산책로 및 연결로	산책로 및 연결로	미룡동 53-15잡	606	606	-	-	-	-	-	-	-	-
	11	11	화장실1	화장실1	미룡동 산208-3유	253	253	-	100	100	-	100	100	-	1층
	12	12	화장실2	화장실2	미룡동 산204-5유	286	286	-	100	100	-	100	100	-	1층
	13	13	화장실3	화장실3	나운동 197-10유	95	95	-	40	40	-	40	40	-	1층
	14	14	양수장	양수장	미룡동 59-6유	2,920	2,920	-	159	159	-	159	159	-	1층
	14-1	14-1	양수장	양수장	미룡동 59-6유	201	201	-	80	80	-	80	80	-	1층
14-2	14-2	관리사택	관리사택	미룡동 59-43대	631	631	-	79	79	-	79	79	-	-	
14-3	14-3	사찰누기및공지	사찰누기및공지	미룡동 59-6유	2,088	2,088	-	-	-	-	-	-	-	-	
15	15	오수펌프장	오수펌프장	나운동 1223-3유	100	100	-	52	52	-	52	52	-	1층	
16	16	도로	도로	-	127,499	127,499	-	-	-	-	-	-	-	-	
17	17	교량(물빛다리)	교량(물빛다리)	미룡동 59유	-	-	-	-	-	-	-	-	-	-	
58	58	수변산책로	수변산책로	미룡동 59유	-	-	-	-	-	-	-	-	-	-	

시설지구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대표번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숙박시설지구						54,196	54,196	-	16,432	16,432	-	83,743	16,432	-	-
숙박시설지구	18	18	호텔1	호텔1	나운동 1195-49대	15,835	15,835	-	4,750	4,750	-	24,360	4,750	-	지하1층 지상0층
	19	19	호텔 및 생활숙박시설	호텔 및 생활숙박시설	나운동 1234-31입	38,361	38,361	-	11,682	11,682	-	59,383	11,682	-	지하1층 지상0층
	19-1	19-1	호텔	호텔	나운동 1234-31입	17,221	17,221	-	6,000	6,000	-	15,783	6,000	-	지하1층 지상0층
	19-2	19-2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나운동 1234-40입	21,140	21,140	-	5,682	5,682	-	43,600	5,682	-	지하1층 지상0층
상가시설지구						47,249	47,249	-	9,472	9,472	-	18,709	18,709	-	-
상가시설지구	20	-	종합매점	-	-	1,143	-	감)1,143	229	-	감)229	458	-	감)229	-
	21	20	일반음식점1	상가1	지곡동 453-3대	982	982	-	165	165	-	330	330	-	2층
	22	21	일반음식점2	상가2	나운동 191-44대	14,962	14,962	-	2,717	2,717	-	5,434	5,434	-	2층
	22-1	21-1	일반음식점	상가2-1	나운동 191-67대	385	385	-	173	173	-	346	346	-	2층
	22-2	21-2	일반음식점	상가2-2	나운동 191-66대	383	383	-	172	172	-	344	344	-	2층
	22-3	21-3	일반음식점	상가2-3	나운동 191-65대	384	384	-	173	173	-	346	346	-	2층
	22-4	21-4	일반음식점	상가2-4	나운동 191-64대	386	386	-	174	174	-	348	348	-	2층
	22-5	21-5	일반음식점	상가2-5	나운동 191-63대	386	386	-	174	174	-	348	348	-	2층
	22-6	21-6	일반음식점	상가2-6	나운동 191-62대	433	433	-	195	195	-	390	390	-	2층
	22-7	21-7	일반음식점	상가2-7	나운동 191-61대	432	432	-	194	194	-	388	388	-	2층
	22-8	21-8	일반음식점	상가2-8	나운동 191-60대	441	441	-	198	198	-	396	396	-	2층
	22-9	21-9	일반음식점	상가2-9	나운동 191-59대	458	458	-	206	206	-	412	412	-	2층
	22-10	21-10	일반음식점	상가2-10	나운동 191-68대	359	359	-	161	161	-	322	322	-	2층
	22-11	21-11	일반음식점	상가2-11	나운동 191-69대	372	372	-	167	167	-	334	334	-	2층
	22-12	21-12	일반음식점	상가2-12	나운동 191-70대	393	393	-	176	176	-	352	352	-	2층
	22-13	21-13	일반음식점	상가2-13	나운동 191-52대	407	407	-	183	183	-	366	366	-	2층
	22-14	21-14	일반음식점	상가2-14	나운동 191-53대	410	410	-	184	184	-	368	368	-	2층
	22-15	21-15	일반음식점	상가2-15	나운동 191-54대	416	416	-	187	187	-	374	374	-	2층
	22-16	21-16	조경지	조경지	나운동 191-44대	5,189	5,189	-	-	-	-	-	-	-	-
	22-17	21-17	도로	도로	나운동 191-44대	2,364	2,364	-	-	-	-	-	-	-	-
	22-18	21-18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191-43대	1,364	1,364	-	-	-	-	-	-	-	-
	23	22	일반음식점3	상가3	나운동 248-20전	8,393	8,393	-	1,457	1,457	-	2,910	2,910	-	2층
	23-1	22-1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248-20전	495	495	-	-	-	-	-	-	-	-
	23-2	22-2	일반음식점	상가3-1	나운동 248-9대	381	381	-	131	131	-	262	262	-	2층
	23-3	22-3	일반음식점	상가3-2	나운동 248-10대	360	360	-	125	125	-	249	249	-	2층
	23-4	22-4	일반음식점	상가3-3	나운동 248-11대	403	403	-	139	139	-	278	278	-	2층
	23-5	22-5	일반음식점	상가3-4	나운동 248-12대	400	400	-	139	139	-	278	278	-	-
	23-6	22-6	일반음식점	상가3-5	나운동 248-13대	403	403	-	140	140	-	280	280	-	2층
23-7	22-7	일반음식점	상가3-6	나운동 248-14대	399	399	-	138	138	-	275	275	-	2층	
23-8	22-8	일반음식점	상가3-7	나운동 248-15대	479	479	-	167	167	-	334	334	-	2층	
23-9	22-9	일반음식점	상가3-8	나운동 248-16대	466	466	-	163	163	-	325	325	-	2층	
23-10	22-10	일반음식점	상가3-9	나운동 248-17대	473	473	-	166	166	-	331	331	-	2층	
-	-	-	-	-	-	-	-	-	149	149	-	298	298	-	-
23-11	22-11	도로	도로	나운동 248-20대	1,521	1,521	-	-	-	-	-	-	-	-	
23-12	22-12	녹지	녹지	나운동 248-20대	2,613	2,613	-	-	-	-	-	-	-	-	

시설 지구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대표번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상 가 시 설 지 구	24	23	일반음식점4	상가4	미룡동 49-1대	7,263	10,412	증)3,149	2,294	2,753	증)459	4,587	5,275	증)688	2층
	24-1	23-1	일반음식점	상가4-1	미룡동 49-4대	879	879	-	217	217	-	434	434	-	2층
	24-2	23-2	일반음식점	상가4-2	미룡동 49-1대	793	793	-	319	319	-	638	638	-	-
	24-3	23-3	일반음식점	상가4-3	미룡동 49-5대	976	976	-	342	342	-	684	684	-	2층
	24-4	23-4	일반음식점	상가4-4	미룡동 49-21대	974	974	-	341	341	-	682	682	-	2층
	24-5	23-5	휴게음식점	상가4-5	미룡동 49-7대	914	914	-	183	183	-	366	366	-	-
	24-6	23-6	일반음식점	상가4-6	미룡동 53-11대	422	422	-	148	148	-	296	296	-	2층
	24-7	23-7	일반음식점	상가4-7	미룡동 53-12대	856	856	-	300	300	-	600	600	-	2층
	24-8	23-8	일반음식점	상가4-8	미룡동 53-13대	846	846	-	296	296	-	592	592	-	2층
	24-9	23-9	일반음식점	상가4-9	미룡동 53-26대	423	423	-	148	148	-	295	295	-	2층
	24-10	23-10	도로	도로	미룡동 49-8도	180	180	-	-	-	-	-	-	-	-
	20	23-11	종합매점	상가4-10	미룡동 49-2갑	-	1,143	증)1,143	-	229	증)229	-	458	증)458	2층
	26-1	23-12	일반음식점	상가4-11	나운동 1215-6대	-	230	증)230	-	230	증)230	-	230	증)230	1층
	26-2	23-13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1215-13대	-	286	증)286	-	-	-	-	-	-	-
	26-3	23-14	조경지	조경지	나운동 1215-6대	-	1,490	증)1,490	-	-	-	-	-	-	-
	25	24	일반음식점5	상가5	미룡동 59-92원	12,500	12,500	-	2,380	2,380	-	4,760	4,760	-	2층
	25-1	24-1	일반음식점	상가5-1	미룡동 59-92원	555	555	-	160	160	-	320	320	-	2층
	25-2	24-2	일반음식점	상가5-2	미룡동 59-93대	564	564	-	160	160	-	320	320	-	2층
	25-3	24-3	일반음식점	상가5-3	미룡동 59-94대	620	620	-	190	190	-	380	380	-	2층
	25-4	24-4	일반음식점	상가5-4	미룡동 59-95대	647	647	-	190	190	-	380	380	-	2층
	25-5	24-5	일반음식점	상가5-5	미룡동 59-96원	598	598	-	200	200	-	400	400	-	2층
	25-6	24-6	일반음식점	상가5-6	미룡동 59-79원	847	847	-	190	190	-	380	380	-	2층
	25-7	24-7	일반음식점	상가5-7	미룡동 59-84대	486	486	-	160	160	-	320	320	-	2층
	25-8	24-8	일반음식점	상가5-8	미룡동 59-83대	585	585	-	160	160	-	320	320	-	2층
	25-9	24-9	일반음식점	상가5-9	미룡동 59-82원	680	680	-	200	200	-	400	400	-	2층
	25-10	24-10	일반음식점	상가5-10	미룡동 59-81대	693	693	-	200	200	-	400	400	-	2층
	25-11	24-11	일반음식점	상가5-11	미룡동 59-80원	545	545	-	160	160	-	320	320	-	2층
	25-12	24-12	일반음식점	상가5-12	미룡동 59-90원	1,261	1,261	-	250	250	-	500	500	-	2층
	25-13	24-13	일반음식점	상가5-13	미룡동 59-88원	427	427	-	160	160	-	320	320	-	2층
	25-14	24-14	도로	도로	미룡동 59-91원	1,512	1,512	-	-	-	-	-	-	-	-
	25-15	24-15	조경지	조경지	미룡동 59-70원	1,464	1,464	-	-	-	-	-	-	-	-
	25-16	24-16	주차장1	주차장1	미룡동 59-85원	436	436	-	-	-	-	-	-	-	-
	25-17	24-17	주차장2	주차장2	미룡동 59-86원	580	580	-	-	-	-	-	-	-	-
26	-	일반음식점6	-	나운동 1215-6대	2,006	-	감)2,006	230	-	감)230	230	-	감)230	-	
26-1	-	일반음식점	-	나운동 1215-6대	230	-	감)230	230	-	감)230	230	-	감)230	-	
26-2	-	주차장	-	나운동 1215-13대	286	-	감)286	-	-	-	-	-	-	-	
26-3	-	조경지	-	나운동 1215-6대	1,490	-	감)1,490	-	-	-	-	-	-	-	

시설 지구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대표번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b>운동·오락시설지구</b>						<b>31,043</b>	<b>31,043</b>	-	<b>382</b>	<b>382</b>	-	<b>382</b>	<b>382</b>	-	-
운 동 오 락 시 설 지 구	27	25	숲체험놀이터	숲체험놀이터	미룡동 148-1전	5,425	5,425	-	-	-	-	-	-	-	-
	28	26	다목적운동장1	다목적운동장1	미룡동 59-97유	6,360	6,360	-	-	-	-	-	-	-	-
	29	27	다목적운동장2	다목적운동장2	나운동 265전	3,742	3,742	-	-	-	-	-	-	-	-
	29-1	27-1	체육시설	체육시설	나운동 265전	2,851	2,851	-	-	-	-	-	-	-	-
	29-2	27-2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264-1전	1,032	1,032	-	-	-	-	-	-	-	-
	30	28	체력단련장1	체력단련장1	나운동 산 335-3유	40	40	-	-	-	-	-	-	-	-
	31	29	체력단련장2	체력단련장2	미룡동 산 204-5유	40	40	-	-	-	-	-	-	-	-
	32	30	체력단련장3	체력단련장3	미룡동 8-1 유	40	40	-	-	-	-	-	-	-	-
	33	31	체력단련장4	체력단련장4	나운동 산 230-6읍	40	40	-	-	-	-	-	-	-	-
	34	32	체력단련장5	체력단련장5	나운동 1203-11전	40	40	-	-	-	-	-	-	-	-
	35	33	커뮤니티회랑	커뮤니티회랑	나운동 산 266-1읍	15,316	15,316	-	382	382	-	382	382	-	1층
	35-1	33-1	커뮤니티회랑	커뮤니티회랑	나운동 산 266-1읍	10,159	10,159	-	-	-	-	-	-	-	-
	35-2	33-2	판매시설	판매시설	나운동 산 268-1읍	1,200	1,200	-	382	382	-	382	382	-	1층
35-3	33-3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산 268-1읍	3,957	3,957	-	-	-	-	-	-	-	-	
<b>휴양·문화시설지구</b>						<b>183,313</b>	<b>183,313</b>	-	<b>1,400</b>	<b>1,400</b>	-	<b>2,170</b>	<b>2,170</b>	-	-
휴 양 문 화 시 설 지 구	36	34	야외갤러리	야외갤러리	나운동 1207-5전	15,815	15,815	-	380	380	-	700	700	-	2층
	36-1	34-1	야외갤러리	야외갤러리	나운동 1207-5전	15,460	15,460	-	-	-	-	-	-	-	-
	36-2	34-2	갤러리(전사관)	갤러리(전사관)	나운동 1196-8유	355	355	-	380	380	-	700	700	-	2층
	37	35	계류장1	계류장1	나운동 213유	95	95	-	-	-	-	-	-	-	-
	38	36	계류장2	계류장2	미룡동 산 214-5읍	661	661	-	-	-	-	-	-	-	-
	39	37	자전거문화센터	자전거문화센터	나운동 261대	9,007	9,007	-	472	472	-	742	742	-	2층
	39-1	37-1	자전거문화센터	자전거문화센터	나운동 261대	870	870	-	180	180	-	340	340	-	2층
	39-2	37-2	실외교육장	실외교육장	나운동 213유	2,073	2,073	-	-	-	-	-	-	-	-
	39-3	37-3	휴식공간	휴식공간	나운동 213유	594	594	-	142	142	-	142	142	-	1층
	39-4	37-4	산책로 및 연결로	산책로 및 연결로	나운동 213유	1,485	1,485	-	-	-	-	-	-	-	-
	39-5	37-5	조경지	조경지	나운동 213유	3,378	3,378	-	-	-	-	-	-	-	-
	39-6	37-6	카누훈련원	카누훈련원	나운동 261-1대	607	607	-	150	150	-	260	260	-	2층
	40	38	숲체험장	숲체험장	미룡동 산 242-17읍	21,375	21,375	-	160	160	-	260	260	-	2층
	40-1	38-1	숲체험관	숲체험관	미룡동 산 242-17읍	434	434	-	160	160	-	260	260	-	2층
	40-2	38-2	숲체험장	숲체험장	미룡동 산 242-17읍	20,941	20,941	-	-	-	-	-	-	-	-
	41	39	휴게쉼터	휴게쉼터	나운동 177유	2,662	2,662	-	-	-	-	-	-	-	-
	42	40	전망휴게쉼터	전망휴게쉼터	미룡동 산 244-2읍	20,668	20,668	-	-	-	-	-	-	-	-
	42-1	40-1	전망휴게쉼터	전망휴게쉼터	미룡동 산 244-2읍	19,935	19,935	-	-	-	-	-	-	-	-
	42-2	40-2	주차장	주차장	미룡동 산 242-13읍	733	733	-	-	-	-	-	-	-	-
43	41	전망대	전망대	나운동 산 366-19읍	985	985	-	80	80	-	160	160	-	2층	
43-1	41-1	전망대	전망대	나운동 산 366-19읍	163	163	-	80	80	-	160	160	-	2층	
43-2	41-2	산책로	산책로	나운동 산 366-19읍	822	822	-	-	-	-	-	-	-	-	

시설 지구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대표번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휴양 문화 시설 지구	44	42	생태습지1	생태습지1	지곡동 421유	25,671	25,671	-	-	-	-	-	-	-	-
	44-1	42-1	생태습지	생태습지	지곡동 421유	20,531	20,531	-	-	-	-	-	-	-	-
	44-2	42-2	진입광장	진입광장	지곡동 415유	1,525	1,525	-	-	-	-	-	-	-	-
	44-3	42-3	주차장	주차장	지곡동 418-4전	1,000	1,000	-	-	-	-	-	-	-	-
	44-4	42-4	산책로 및 연결로	산책로 및 연결로	지곡동 415유	2,615	2,615	-	-	-	-	-	-	-	-
	45	43	생태습지2	생태습지2	미룡동 1-4유	7,633	7,633	-	-	-	-	-	-	-	-
	46	44	생태습지3	생태습지3	나운동 1196-4유	5,045	5,045	-	-	-	-	-	-	-	-
	46-1	44-1	수변관찰테크	수변관찰테크	나운동 1196-4유	373	373	-	-	-	-	-	-	-	-
	46-2	44-2	생태습지	생태습지	나운동 1196-5유	4,672	4,672	-	-	-	-	-	-	-	-
	47	45	역세원	역세원	미룡동 4유	11,326	11,326	-	-	-	-	-	-	-	-
	47-1	45-1	주차장	주차장	미룡동 4유	928	928	-	-	-	-	-	-	-	-
	47-2	45-2	역세원	역세원	미룡동 4유	10,398	10,398	-	-	-	-	-	-	-	-
	48	46	편백나무쉼터	편백나무쉼터	나운동 165전	10,771	10,771	-	-	-	-	-	-	-	-
	48-1	46-1	편백나무쉼터	편백나무쉼터	나운동 165전	9,616	9,616	-	-	-	-	-	-	-	-
	48-2	46-2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173전	1,155	1,155	-	-	-	-	-	-	-	-
	49	47	조경휴게소1	조경휴게소1	나운동 191-22대	36,878	36,878	-	108	108	-	108	108	-	1층
	49-1	47-1	잔디마당	잔디마당	나운동 191-22대	1,069	1,069	-	-	-	-	-	-	-	-
	49-2	47-2	야외무대	야외무대	나운동 191-25전	1,858	1,858	-	-	-	-	-	-	-	-
	49-3	47-3	체육시설	체육시설	나운동 191-25전	3,779	3,779	-	-	-	-	-	-	-	-
	49-4	47-4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188-7유	3,051	3,051	-	-	-	-	-	-	-	-
	49-5	47-5	도로	도로	나운동 191-18전	620	620	-	-	-	-	-	-	-	-
	49-6	47-6	화장실	화장실	나운동 191-78입	127	127	-	108	108	-	108	108	-	1층
	49-7	47-7	산책로 및 연결로	산책로 및 연결로	나운동 191-34전	3,693	3,693	-	-	-	-	-	-	-	-
	49-8	47-8	조경지	조경지	나운동 188-11유	22,681	22,681	-	-	-	-	-	-	-	-
	50	48	조경휴게소2	조경휴게소2	나운동 1196-4유	3,376	3,376	-	-	-	-	-	-	-	-
	51	49	숲속산책쉼터	숲속산책쉼터	미룡동 산240-8입	1,285	1,285	-	-	-	-	-	-	-	-
	52	50	숲속산책쉼터	숲속산책쉼터	나운동 산284-1입	3,147	3,147	-	-	-	-	-	-	-	-
	52-1	50-1	휴게쉼터	휴게쉼터	나운동 1195-6전	1,781	1,781	-	-	-	-	-	-	-	-
	52-2	50-2	산책로 및 연결로	산책로 및 연결로	나운동 산284-1입	1,366	1,366	-	-	-	-	-	-	-	-
	53	51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나운동 1222-13전	6,913	6,913	-	200	200	-	200	200	-	1층
53-1	51-1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1222-13전	6,352	6,352	-	-	-	-	-	-	-	-	
53-2	51-2	야외무대	야외무대	나운동 1222-21전	251	251	-	100	100	-	100	100	-	1층	
53-3	51-3	화장실	화장실	나운동 1222-43잡	310	310	-	100	100	-	100	100	-	1층	

시설 지구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대표번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타시설지구						1,274,536	1,274,536	-	-	-	-	-	-	-	-
기 타 시 설 지 구	54	52	상징탑	상징탑	나운동 1234-5전	107	107	-	-	-	-	-	-	-	-
	55	53	고사분수	고사분수	나운동 48-6유	-	-	-	-	-	-	-	-	-	-
	56	54	녹지	녹지	-	1,002,723	1,002,723	-	-	-	-	-	-	-	-
	57	55	유지	유지	-	271,706	271,706	-	-	-	-	-	-	-	-

※상가시설지구(상가)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1.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소매점에 한함.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함.
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4호 이용업 및 제5호 미용업에 한함.
4. 사진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사진관에 한함.
5. 은과관광지 조성계획에 부합하는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마. 지형도면고시 - “계재 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 1) 공간시설 - 유원지

- 유원지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은파 유원지	나운동 미제저수지 일원	2,312,513	-	2,312,513	전북고714 (76.10.06)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표

시설지구	면 적 (m <sup>2</sup> )				건축연면적(m <sup>2</sup> )		
	기 정	변 경	증감	구성비(%)	기 정	변 경	증감
<b>합 계</b>	<b>2,312,513</b>	<b>2,312,513</b>	-	100.0	<b>106,053</b>	<b>106,053</b>	-
편익 및 관리시설	204,392	204,392	-	8.84	19,690	19,690	-
휴양시설	204,033	204,033	-	8.82	84,111	84,111	-
운동시설	36,025	36,025	-	1.56	1,124	1,124	-
특수시설	49,733	49,733	-	2.15	1,128	1,128	-
기타시설	1,818,330	1,818,330	-	78.63	-	-	-

다.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시설 지구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2,312,513	2,312,513	-	28,650	28,650	-	106,053	106,053	-	
편의 및 관리시설				204,392	204,392	-	10,288	10,288	-	19,690	19,690	-	
편의및관리	1	종합관리사무소		95	95	-	85	85	-	170	170	-	
편의및관리	2	주차장1		12,338	12,338	-	100	100	-	100	100	-	
편의및관리	3	주차장2		1,453	1,453	-	100	100	-	100	100	-	
편의및관리	4	주차장3		7,246	7,246	-	-	-	-	-	-	-	
편의및관리	11	화장실1		253	253	-	100	100	-	100	100	-	
편의및관리	12	화장실2		286	286	-	100	100	-	100	100	-	
편의및관리	13	화장실3		95	95	-	40	40	-	40	40	-	
편의및관리	14	양수장		2,920	2,920	-	159	159	-	159	159	-	
편의및관리	15	오수펌프장		100	100	-	52	52	-	52	52	-	
편의및관리	16	도로		131,372	131,372	-	-	-	-	-	-	-	
편의및관리	17	교량(물빛다리)		-	-	-	-	-	-	-	-	-	
편의및관리	-	종합매점	-	1,143	-	감)1,143	229	-	감)229	458	-	감)458	
편의및관리	20	일반음식점1	상가1	982	982	-	165	165	-	330	330	-	
편의및관리	21	일반음식점2	상가2	14,962	14,962	-	2,717	2,717	-	5,434	5,434	-	
편의및관리	22	일반음식점3	상가3	8,393	8,393	-	1,457	1,457	-	2,910	2,910	-	
편의및관리	23	일반음식점4	상가4	7,263	10,412	증)3,149	2,294	2,753	증)459	4,587	5,275	증)688	
편의및관리	24	일반음식점5	상가5	12,500	12,500	-	2,380	2,380	-	4,760	4,760	-	
편의및관리	-	일반음식점6	-	2,006	-	감)2,006	230	-	감)230	230	-	감)230	
편의및관리	41	전망대		985	985	-	80	80	-	160	160	-	
편의및관리	56	수변산책로		-	-	-	-	-	-	-	-	-	
휴 양 시 설				204,033	204,033	-	16,700	16,700	-	84,111	84,111	-	
휴양	18	호텔1		15,835	15,835	-	4,750	4,750	-	24,360	24,360	-	
휴양	19	호텔 및 생활숙박시설		38,361	38,361	-	11,682	11,682	-	59,383	59,383	-	
휴양	38	숲체험장		21,375	21,375	-	160	160	-	260	260	-	
휴양	39	휴게쉼터		2,662	2,662	-	-	-	-	-	-	-	
휴양	40	전망휴게쉼터		20,668	20,668	-	-	-	-	-	-	-	
휴양	42	생태습지1		25,671	25,671	-	-	-	-	-	-	-	
휴양	43	생태습지2		7,633	7,633	-	-	-	-	-	-	-	
휴양	44	생태습지3		5,045	5,045	-	-	-	-	-	-	-	

시설 지구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휴양	45	억새원		11,326	11,326	-	-	-	-	-	-	-	
휴양	46	편백나무쉼터		10,771	10,771	-	-	-	-	-	-	-	
휴양	47	조경휴게소1		36,878	36,878	-	108	108	-	108	108	-	
휴양	48	조경휴게소2		3,376	3,376	-	-	-	-	-	-	-	
휴양	49	숲속산책쉼터1		1,285	1,285	-	-	-	-	-	-	-	
휴양	50	숲속산책쉼터2		3,147	3,147	-	-	-	-	-	-	-	
<b>운 동 시 설</b>				<b>36,025</b>	<b>36,025</b>	<b>-</b>	<b>854</b>	<b>854</b>	<b>-</b>	<b>1,124</b>	<b>1,124</b>	<b>-</b>	
운동	26	다목적운동장1		6,360	6,360	-	-	-	-	-	-	-	
운동	27	다목적운동장2		3,742	3,742	-	-	-	-	-	-	-	
운동	28	체력단련장1		40	40	-	-	-	-	-	-	-	
운동	29	체력단련장2		40	40	-	-	-	-	-	-	-	
운동	30	체력단련장3		40	40	-	-	-	-	-	-	-	
운동	31	체력단련장4		40	40	-	-	-	-	-	-	-	
운동	32	체력단련장5		40	40	-	-	-	-	-	-	-	
운동	33	커뮤니티회랑		15,316	15,316	-	382	382	-	382	382	-	
운동	35	계류장1		739	739	-	-	-	-	-	-	-	
운동	36	계류장2		661	661	-	-	-	-	-	-	-	
운동	37	자전거문화센터		9,007	9,007	-	472	472	-	742	742	-	
<b>특 수 시 설</b>				<b>49,733</b>	<b>49,733</b>	<b>-</b>	<b>808</b>	<b>808</b>	<b>-</b>	<b>1,128</b>	<b>1,128</b>	<b>-</b>	
특수	5	광장1		7,576	7,576	-	-	-	-	-	-	-	
특수	6	광장2		4,229	4,229	-	-	-	-	-	-	-	
특수	7	광장3		857	857	-	-	-	-	-	-	-	
특수	8	광장4		3,620	3,620	-	228	228	-	228	228	-	
특수	9	광장5		1,908	1,908	-	-	-	-	-	-	-	
특수	10	잔디광장		3,283	3,283	-	-	-	-	-	-	-	
특수	25	숲체험놀이터		5,425	5,425	-	-	-	-	-	-	-	
특수	34	야외갤러리		15,815	15,815	-	380	380	-	700	700	-	
특수	51	야외공연장		6,913	6,913	-	200	200	-	200	200	-	
특수	52	상징탑		107	107	-	-	-	-	-	-	-	
<b>기 타 시 설</b>				<b>1,818,330</b>	<b>1,818,330</b>	<b>-</b>	<b>-</b>	<b>-</b>	<b>-</b>	<b>-</b>	<b>-</b>	<b>-</b>	
기타	53	고사분수		-	-	-	-	-	-	-	-	-	
기타	54	녹지		1,017,496	1,017,496	-	-	-	-	-	-	-	
기타	55	유지		800,834	800,834	-	-	-	-	-	-	-	

라.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조서

시설 지구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대표번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b>총 계</b>						<b>2,312,513</b>	<b>2,312,513</b>	-	<b>28,650</b>	<b>28,650</b>	-	<b>106,053</b>	<b>106,053</b>	-	-
<b>편의 및 관리시설</b>						<b>204,392</b>	<b>204,392</b>	-	<b>10,288</b>	<b>10,288</b>	-	<b>19,690</b>	<b>19,690</b>	-	-
편의 및 관 리 시 설	1	1	종합관리사무소	종합관리사무소	나운동 1234-20갑	95	95	-	85	85	-	170	170	-	2층
	1-1	1-1	본건물	본건물	나운동 1234-20갑	95	95	-	85	85	-	170	170	-	2층
	2	2	주차장1	주차장1	나운동 1223-4유	12,338	12,338	-	100	100	-	100	100	-	1층
	2-1	2-1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1223-4유	12,243	12,243	-	-	-	-	-	-	-	-
	2-2	2-2	화장실	화장실	나운동 1223-5유	95	95	-	100	100	-	100	100	-	1층
	3	3	주차장2	주차장2	미룡동 산 262-2도	1,453	1,453	-	100	100	-	100	100	-	1층
	3-1	3-1	주차장	주차장	미룡동 산 262-2도	1,353	1,353	-	-	-	-	-	-	-	-
	3-2	3-2	화장실 및 매점	화장실 및 매점	미룡동 산241 임	100	100	-	100	100	-	100	100	-	1층
	4	4	주차장3	주차장3	나운동 1195-72전	7,246	7,246	-	-	-	-	-	-	-	-
	11	11	화장실1	화장실1	미룡동 산 208-3유	253	253	-	100	100	-	100	100	-	1층
	12	12	화장실2	화장실2	미룡동 산204-5유	286	286	-	100	100	-	100	100	-	1층
	13	13	화장실3	화장실3	나운동 197-10유	95	95	-	40	40	-	40	40	-	1층
	14	14	양수장	양수장	미룡동 59-6 류	2,920	2,920	-	159	159	-	159	159	-	1층
	14-1	14-1	양수장	양수장	미룡동 59-6 유	201	201	-	80	80	-	80	80	-	1층
	14-2	14-2	관리사택	관리사택	미룡동 59-43 대	631	631	-	79	79	-	79	79	-	-
	14-3	14-3	사살구 및 공지	사살구 및 공지	미룡동 59-6 유	2,088	2,088	-	-	-	-	-	-	-	-
	15	15	오수펌프장	오수펌프장	나운동 1223-3유	100	100	-	52	52	-	52	52	-	1층
	16	16	도로	도로	-	131,372	131,372	-	-	-	-	-	-	-	-
	17	17	교량(물빛다리)	교량(물빛다리)	미룡동 59유	-	-	-	-	-	-	-	-	-	-
	20	-	종합매점	-	-	1,143	-	감)1,143	229	-	감)229	458	-	감)229	-
	21	20	일반음식점1	상가1	지곡동 453-3대	982	982	-	165	165	-	330	330	-	2층
	22	21	일반음식점2	상가2	나운동 191-67	14,962	14,962	-	2,717	2,717	-	5,434	5,434	-	2층
	22-1	21-1	일반음식점	상가2-1	나운동 191-67대	385	385	-	173	173	-	346	346	-	2층
	22-2	21-2	일반음식점	상가2-2	나운동 191-66대	383	383	-	172	172	-	344	344	-	2층
	22-3	21-3	일반음식점	상가2-3	나운동 191-65대	384	384	-	173	173	-	346	346	-	2층
	22-4	21-4	일반음식점	상가2-4	나운동 191-64대	386	386	-	174	174	-	348	348	-	2층
	22-5	21-5	일반음식점	상가2-5	나운동 191-63대	386	386	-	174	174	-	348	348	-	2층
	22-6	21-6	일반음식점	상가2-6	나운동 191-62대	433	433	-	195	195	-	390	390	-	2층
22-7	21-7	일반음식점	상가2-7	나운동 191-61대	432	432	-	194	194	-	388	388	-	2층	
22-8	21-8	일반음식점	상가2-8	나운동 191-60대	441	441	-	198	198	-	396	396	-	2층	

시설 지구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대표번지 )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편의 및 관리 시설	22-9	21-9	일반음식점	상가2-9	나운동 191-59대	458	458	-	206	206	-	412	412	-	2층	
	22-10	21-10	일반음식점	상가2-10	나운동 191-68대	359	359	-	161	161	-	322	322	-	2층	
	22-11	21-11	일반음식점	상가2-11	나운동 191-69대	372	372	-	167	167	-	334	334	-	2층	
	22-12	21-12	일반음식점	상가2-12	나운동 191-70대	393	393	-	176	176	-	352	352	-	2층	
	22-13	21-13	일반음식점	상가2-13	나운동 191-52대	407	407	-	183	183	-	366	366	-	2층	
	22-14	21-14	일반음식점	상가2-14	나운동 191-53대	410	410	-	184	184	-	368	368	-	2층	
	22-15	21-15	일반음식점	상가2-15	나운동 191-54대	416	416	-	187	187	-	374	374	-	2층	
	22-16	21-16	조경지	조경지	나운동 191-44대	5,189	5,189	-	-	-	-	-	-	-	-	
	22-17	21-17	도로	도로	나운동 191-44대	2,364	2,364	-	-	-	-	-	-	-	-	
	22-18	21-18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191-43대	1,364	1,364	-	-	-	-	-	-	-	-	
	23	22	일반음식점3	상가3	나운동 248-20전	8,393	8,393	-	1,457	1,457	-	2,910	2,910	-	2층	
	23-1	22-1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248-20전	495	495	-	-	-	-	-	-	-	-	
	23-2	22-2	일반음식점	상가3-1	나운동 248-9대	381	381	-	131	131	-	262	262	-	2층	
	23-3	22-3	일반음식점	상가3-2	나운동 248-10대	360	360	-	125	125	-	249	249	-	2층	
	23-4	22-4	일반음식점	상가3-3	나운동 248-11대	403	403	-	139	139	-	278	278	-	2층	
	23-5	22-5	일반음식점	상가3-4	나운동 248-12대	400	400	-	139	139	-	278	278	-	-	
	23-6	22-6	일반음식점	상가3-5	나운동 248-13대	403	403	-	140	140	-	280	280	-	2층	
	23-7	22-7	일반음식점	상가3-6	나운동 248-14대	399	399	-	138	138	-	275	275	-	2층	
	23-8	22-8	일반음식점	상가3-7	나운동 248-15대	479	479	-	167	167	-	334	334	-	2층	
	23-9	22-9	일반음식점	상가3-8	나운동 248-16대	466	466	-	163	163	-	325	325	-	2층	
	23-10	22-10	일반음식점	상가3-9	나운동 248-17대	473	473	-	166	166	-	331	331	-	2층	
	-	-	-	-	-	-	-	-	-	149	149	-	298	298	-	-
	23-11	22-11	도로	도로	나운동 248-20대	1,521	1,521	-	-	-	-	-	-	-	-	
	23-12	22-12	녹지	녹지	나운동 248-20대	2,613	2,613	-	-	-	-	-	-	-	-	
	24	23	일반음식점4	상가4	미봉동 49-1대	7,263	10,412	증)3,149	2,294	2,753	증)459	4,587	5,275	증)688	2층	
	24-1	23-1	일반음식점	상가4-1	미봉동 49-4대	879	879	-	217	217	-	434	434	-	2층	
	24-2	23-2	일반음식점	상가4-2	미봉동 49-1대	793	793	-	319	319	-	638	638	-	-	
	24-3	23-3	일반음식점	상가4-3	미봉동 49-5대	976	976	-	342	342	-	684	684	-	2층	
	24-4	23-4	일반음식점	상가4-4	미봉동 49-21대	974	974	-	341	341	-	682	682	-	2층	
	24-5	23-5	휴게음식점	상가4-5	미봉동 49-7대	914	914	-	183	183	-	366	366	-	-	
	24-6	23-6	일반음식점	상가4-6	미봉동 53-11대	422	422	-	148	148	-	296	296	-	2층	
	24-7	23-7	일반음식점	상가4-7	미봉동 53-12대	856	856	-	300	300	-	600	600	-	2층	
24-8	23-8	일반음식점	상가4-8	미봉동 53-13대	846	846	-	296	296	-	592	592	-	2층		
24-9	23-9	일반음식점	상가4-9	미봉동 53-26대	423	423	-	148	148	-	295	295	-	2층		
24-10	23-10	도로	도로	미봉동 49-8도	180	180	-	-	-	-	-	-	-	-		
20	23-11	종합매점	상가4-10	미봉동 49-2갑	-	1,143	증)1,143	-	229	증)229	-	458	증)458	2층		
26-1	23-12	일반음식점	상가4-11	나운동 1215-6대	-	230	증)230	-	230	증)230	-	230	증)230	1층		
26-2	23-13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1215-13대	-	286	증)286	-	-	-	-	-	-	-		
26-3	23-14	조경지	조경지	나운동 1215-6대	-	1,490	증)1,490	-	-	-	-	-	-	-		

시설 지구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대표번지 )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편 의 및 관 리 시 설	25	24	일반음식점5	상가5	미룡동 50-92원	12,500	12,500	-	2,380	2,380	-	4,760	4,760	-	2층
	25-1	24-1	일반음식점	상가5-1	미룡동 50-92원	555	555	-	160	160	-	320	320	-	2층
	25-2	24-2	일반음식점	상가5-2	미룡동 50-93대	564	564	-	160	160	-	320	320	-	2층
	25-3	24-3	일반음식점	상가5-3	미룡동 50-94대	620	620	-	190	190	-	380	380	-	2층
	25-4	24-4	일반음식점	상가5-4	미룡동 50-95대	647	647	-	190	190	-	380	380	-	2층
	25-5	24-5	일반음식점	상가5-5	미룡동 50-96원	598	598	-	200	200	-	400	400	-	2층
	25-6	24-6	일반음식점	상가5-6	미룡동 50-79원	847	847	-	190	190	-	380	380	-	2층
	25-7	24-7	일반음식점	상가5-7	미룡동 50-84대	486	486	-	160	160	-	320	320	-	2층
	25-8	24-8	일반음식점	상가5-8	미룡동 50-83대	585	585	-	160	160	-	320	320	-	2층
	25-9	24-9	일반음식점	상가5-9	미룡동 50-82원	680	680	-	200	200	-	400	400	-	2층
	25-10	24-10	일반음식점	상가5-10	미룡동 50-81대	693	693	-	200	200	-	400	400	-	2층
	25-11	24-11	일반음식점	상가5-11	미룡동 50-80원	545	545	-	160	160	-	320	320	-	2층
	25-12	24-12	일반음식점	상가5-12	미룡동 50-90원	1,261	1,261	-	250	250	-	500	500	-	2층
	25-13	24-13	일반음식점	상가5-13	미룡동 50-88원	427	427	-	160	160	-	320	320	-	2층
	25-14	24-14	도로	도로	미룡동 50-91원	1,512	1,512	-	-	-	-	-	-	-	-
	25-15	24-15	조경지	조경지	미룡동 50-70원	1,464	1,464	-	-	-	-	-	-	-	-
	25-16	24-16	주차장1	주차장1	미룡동 50-85원	436	436	-	-	-	-	-	-	-	-
25-17	24-17	주차장2	주차장2	미룡동 50-86원	580	580	-	-	-	-	-	-	-	-	
26	-	일반음식점6	-	나운동 1215-6대	2,006	-	감)2,006	230	-	감)230	230	-	감)230	-	
26-1	-	일반음식점	-	나운동 1215-6대	230	-	감)230	230	-	감)230	230	-	감)230	-	
26-2	-	주차장	-	나운동 1215-13대	286	-	감)286	-	-	-	-	-	-	-	
26-3	-	조경지	-	나운동 1215-6대	1,490	-	감)1,490	-	-	-	-	-	-	-	
43	41	전망대	전망대	나운동 산 366-19입	985	985	-	80	80	-	160	160	-	2층	
43-1	41-1	전망대	전망대	나운동 산 366-19입	163	163	-	80	80	-	160	160	-	2층	
43-2	41-2	산책로	산책로	나운동 산 366-19입	822	822	-	-	-	-	-	-	-	-	
58	56	수변산책로		-	-	-	-	-	-	-	-	-	-	-	
<b>휴양시설</b>						<b>204,033</b>	<b>204,033</b>	<b>-</b>	<b>16,700</b>	<b>16,700</b>	<b>-</b>	<b>84,111</b>	<b>84,111</b>	<b>-</b>	<b>-</b>
휴 양 시 설	18	18	호텔1	호텔1	나운동 1195-49대	15,835	15,835	-	4,750	4,750	-	24,360	4,750	-	지하층 지상10층
	19	19	호텔 및 생활숙박시설	호텔 및 생활숙박시설	나운동 1234-31입	38,361	38,361	-	11,682	11,682	-	59,383	11,682	-	지하층 지상11층
	19-1	19-1	호텔	호텔	나운동 1234-31입	17,221	17,221	-	6,000	6,000	-	15,783	6,000	-	지하층 지상11층
	19-2	19-2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나운동 1234-40입	21,140	21,140	-	5,682	5,682	-	43,600	5,682	-	지하층 지상11층
	40	38	숲체험장	숲체험장	미룡동 산 242-17입	21,375	21,375	-	160	160	-	260	260	-	2층
	40-1	38-1	숲체험관	숲체험관	미룡동 산 242-17입	434	434	-	160	160	-	260	260	-	2층
	40-2	38-2	숲체험장	숲체험장	미룡동 산 242-17입	20,941	20,941	-	-	-	-	-	-	-	-
	41	39	휴게쉼터	휴게쉼터	나운동 177유	2,662	2,662	-	-	-	-	-	-	-	-
	42	40	전망휴게쉼터	전망휴게쉼터	미룡동 산 244-2입	20,668	20,668	-	-	-	-	-	-	-	-
	42-1	40-1	전망휴게쉼터	전망휴게쉼터	미룡동 산 244-2입	19,935	19,935	-	-	-	-	-	-	-	-
42-2	40-2	주차장	주차장	미룡동 산 242-13입	733	733	-	-	-	-	-	-	-	-	

시설 지구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대표번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휴 양 시 설	44	42	생태습지1	생태습지1	지곡동 421유	25,671	5,671	-	-	-	-	-	-	-	-
	44-1	42-1	생태습지	생태습지	지곡동 421유	20,531	20,531	-	-	-	-	-	-	-	-
	44-2	42-2	진입광장	진입광장	지곡동 415유	1,525	1,525	-	-	-	-	-	-	-	-
	44-3	42-3	주차장	주차장	지곡동 418-4전	1,000	1,000	-	-	-	-	-	-	-	-
	44-4	42-4	산책로 및 연결로	산책로 및 연결로	지곡동 415유	2,615	2,615	-	-	-	-	-	-	-	-
	45	43	생태습지2	생태습지2	미룡동 1-4유	7,633	7,633	-	-	-	-	-	-	-	-
	46	44	생태습지3	생태습지3	나운동 1196-4유	5,045	5,045	-	-	-	-	-	-	-	-
	46-1	44-1	수변관찰데크	수변관찰데크	나운동 1196-4유	373	373	-	-	-	-	-	-	-	-
	46-2	44-2	생태습지	생태습지	나운동 1196-5유	4,672	4,672	-	-	-	-	-	-	-	-
	47	45	억새원	억새원	미룡동 4유	11,326	11,326	-	-	-	-	-	-	-	-
	47-1	45-1	주차장	주차장	미룡동 4유	928	928	-	-	-	-	-	-	-	-
	47-2	45-2	억새원	억새원	미룡동 4유	10,398	10,398	-	-	-	-	-	-	-	-
	48	46	편백나무쉼터	편백나무쉼터	나운동 165전	10,771	10,771	-	-	-	-	-	-	-	-
	48-1	46-1	편백나무쉼터	편백나무쉼터	나운동 165전	9,616	9,616	-	-	-	-	-	-	-	-
	48-2	46-2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173전	1,155	1,155	-	-	-	-	-	-	-	-
	49	47	조경휴게소1	조경휴게소1	나운동 191-22대	36,878	36,878	-	108	108	-	108	108	-	1층
	49-1	47-1	잔디마당	잔디마당	나운동 191-22대	1,069	1,069	-	-	-	-	-	-	-	-
	49-2	47-2	야외무대	야외무대	나운동 191-25전	1,858	1,858	-	-	-	-	-	-	-	-
	49-3	47-3	체육시설	체육시설	나운동 191-25전	3,779	3,779	-	-	-	-	-	-	-	-
	49-4	47-4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188-7유	3,051	3,051	-	-	-	-	-	-	-	-
	49-5	47-5	도로	도로	나운동 191-18전	620	620	-	-	-	-	-	-	-	-
	49-6	47-6	화장실	화장실	나운동 191-78입	127	127	-	108	108	-	108	108	-	1층
	49-7	47-7	산책로 및 연결로	산책로 및 연결로	나운동 191-34전	3,693	3,693	-	-	-	-	-	-	-	-
	49-8	47-8	조경지	조경지	나운동 188-11유	22,681	22,681	-	-	-	-	-	-	-	-
	50	48	조경휴게소2	조경휴게소2	나운동 1196-4유	3,376	3,376	-	-	-	-	-	-	-	-
	51	49	숲속산책쉼터	숲속산책쉼터	미룡동 산240-8입	1,285	1,285	-	-	-	-	-	-	-	-
	52	50	숲속산책쉼터	숲속산책쉼터	나운동 산284-1입	3,147	3,147	-	-	-	-	-	-	-	-
	52-1	50-1	휴게쉼터	휴게쉼터	나운동 1195-6전	1,781	1,781	-	-	-	-	-	-	-	-
52-2	50-2	산책로 및 연결로	산책로 및 연결로	나운동 산284-1입	1,366	1,366	-	-	-	-	-	-	-	-	
<b>운동시설</b>						<b>36,025</b>	<b>36,025</b>	<b>-</b>	<b>854</b>	<b>854</b>	<b>-</b>	<b>1,124</b>	<b>1,124</b>	<b>-</b>	
운 동 시 설	28	26	다목적운동장1	다목적운동장1	미룡동 59-97유	6,360	6,360	-	-	-	-	-	-	-	
	29	27	다목적운동장2	다목적운동장2	나운동 265전	3,742	3,742	-	-	-	-	-	-	-	
	29-1	27-1	체육시설	체육시설	나운동 265전	2,704	2,704	-	-	-	-	-	-	-	
	29-2	27-2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264-1전	1,008	1,008	-	-	-	-	-	-	-	
	30	28	체력단련장1	체력단련장1	나운동 산335-3유	40	40	-	-	-	-	-	-	-	
	31	29	체력단련장2	체력단련장2	미룡동 산204-5유	40	40	-	-	-	-	-	-	-	

시설 지구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대표번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운 동 시 설	32	30	체력단련장3	체력단련장3	미룡동 8-1유	40	40	-	-	-	-	-	-	-	-
	33	31	체력단련장4	체력단련장4	나운동 산230-6입	40	40	-	-	-	-	-	-	-	-
	34	32	체력단련장5	체력단련장5	나운동 1203-11전	40	40	-	-	-	-	-	-	-	-
	35	33	커뮤니티회랑	커뮤니티회랑	나운동 산266-1입	15,316	15,316	-	382	382	-	382	382	-	1층
	35-1	33-1	커뮤니티회랑	커뮤니티회랑	나운동 산266-1입	10,159	10,159	-	-	-	-	-	-	-	-
	35-2	33-2	판매시설	판매시설	나운동 산268-1입	1,200	1,200	-	382	382	-	382	382	-	1층
	35-3	33-3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산268-1입	3,957	3,957	-	-	-	-	-	-	-	-
	37	35	계류장1	계류장1	나운동 213유	739	739	-	-	-	-	-	-	-	-
	38	36	계류장2	계류장2	미룡동 산214-5입	661	661	-	-	-	-	-	-	-	-
	39	37	자전거화센터	자전거화센터	나운동 261대	9,007	9,007	-	472	472	-	742	742	-	2층
	39-1	37-1	자전거화센터	자전거화센터	나운동 261대	870	870	-	180	180	-	340	340	-	2층
	39-2	37-2	실외교육장	실외교육장	나운동 213유	2,073	2,073	-	-	-	-	-	-	-	-
	39-3	37-3	휴식공간	휴식공간	나운동 213유	594	594	-	142	142	-	142	142	-	1층
	39-4	37-4	산책로 및 연결로	산책로 및 연결로	나운동 213유	1,485	1,485	-	-	-	-	-	-	-	-
	39-5	37-5	조경지	조경지	나운동 213유	3,378	3,378	-	-	-	-	-	-	-	-
	39-6	37-6	카누훈련원	카누훈련원	나운동 261-1대	607	607	-	150	150	-	260	260	-	2층
<b>특수시설</b>						<b>49,733</b>	<b>49,733</b>	<b>-</b>	<b>808</b>	<b>808</b>	<b>-</b>	<b>1,128</b>	<b>1,128</b>	<b>-</b>	<b>-</b>
특 수 시 설	5	5	광장1	광장1	나운동 1223-4유	7,576	7,576	-	-	-	-	-	-	-	-
	6	6	광장2	광장2	나운동 1234-7잡	4,229	4,229	-	-	-	-	-	-	-	-
	6-1	6-1	잔디및산책로	잔디및산책로	나운동 1234-7잡	2,058	2,058	-	-	-	-	-	-	-	-
	6-2	6-2	조경지	조경지	나운동 1234-7잡	2,171	2,171	-	-	-	-	-	-	-	-
	7	7	광장3	광장3	나운동 1196-7유	857	857	-	-	-	-	-	-	-	-
	8	8	광장4	광장4	미룡동 48-8유	3,620	3,620	-	228	228	-	228	228	-	1층
	8-1	8-1	중앙광장	중앙광장	미룡동 49-39잡	2,461	2,461	-	-	-	-	-	-	-	-
	8-2	8-2	공연무대 및 화장실	공연무대 및 화장실	미룡동 48-8유	529	529	-	228	228	-	228	228	-	1층
	8-3	8-3	목재데크	목재데크	미룡동 48-42유	630	630	-	-	-	-	-	-	-	-
	9	9	광장5	광장5	나운동 산243-2입	1,908	1,908	-	-	-	-	-	-	-	-
	10	10	잔디광장	잔디광장	미룡동 49-47잡	3,283	3,283	-	-	-	-	-	-	-	-
	10-1	10-1	잔디광장	잔디광장	미룡동 49-47잡	772	772	-	-	-	-	-	-	-	-
	10-2	10-2	기념탑광장	기념탑광장	미룡동 53-15잡	1,905	1,905	-	-	-	-	-	-	-	-
	10-3	10-3	산책로 및 연결로	산책로 및 연결로	미룡동 53-15잡	606	606	-	-	-	-	-	-	-	-
	27	25	순채험놀이터	순채험놀이터	미룡동 148-1전	5,425	5,425	-	-	-	-	-	-	-	-
	36	34	야외갤러리	야외갤러리	나운동 1207-5전	15,815	15,815	-	380	380	-	700	700	-	2층
36-1	34-1	야외갤러리	야외갤러리	나운동 1207-5전	15,460	15,460	-	-	-	-	-	-	-	-	
36-2	34-2	갤러리(전시관)	갤러리(전시관)	나운동 1196-8유	355	355	-	380	380	-	700	700	-	2층	

시설 지구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대표번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특수 시설	53	51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나운동 1222-13전	6,913	6,913	-	200	200	-	200	200	-	1층
	53-1	51-1	주차장	주차장	나운동 1222-13전	6,352	6,352	-	-	-	-	-	-	-	-
	53-2	51-2	야외무대	야외무대	나운동 1222-21전	251	251	-	100	100	-	100	100	-	1층
	53-3	51-3	화장실	화장실	나운동 1222-43잡	310	310	-	100	100	-	100	100	-	1층
	54	52	상징탑	상징탑	나운동 1234-5전	107	107	-	-	-	-	-	-	-	-
기타시설						1,818,330	1,818,330	-	-	-	-	-	-	-	-
기 타 시 설	55	53	고사분수	고사분수	나운동 48-6유	-	-	-	-	-	-	-	-	-	-
	56	54	녹지	녹지	-	1,017,496	1,017,496	-	-	-	-	-	-	-	-
	57	55	유지	유지	-	800,834	800,834	-	-	-	-	-	-	-	-

※ 편익 및 관리시설(상가)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1.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소매점에 한함.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함.
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4호 이용업 및 제5호 미용업에 한함.
4. 사진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사진관에 한함.
5. 은과관광지 조성계획에 부합하는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마.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3,818	131,372				
대로 소계					1,800	47,317				
기정	대로	2	1	30	1,800	47,317	간선도로	나운동174-3도	지곡동산189-1임	
중로 소계					1,680	28,243				
기정	중로	2	2	15	1,000	17,431	내부순환도로	나운동1195-14도	나운동174-3도	
기정	중로	2	3	15	275	4,169	내부순환도로	지곡동산114-6유	지곡동418-10전	
기정	중로	3	1	12	405	6,643	내부순환도로	나운동1234도	나운동산373-7도	
소로 소계					10,908	55,812				
기정	소로	1	1	10	2,298	24,691	내부순환도로	나운동산373-3도	지곡동461-1전	
기정	소로	1	3	10	99	1,059	내부순환도로	나운동1195-54전	나운동1195-52임	
기정	소로	3	1	4	2,043	8,774	산책로	나운동213유	나운동산243-2임	
기정	소로	3	2	4	547	2,190	산책로	나운동1195-53임	나운동1506구	
기정	소로	3	3	4	435	1,271	산책로	나운동1223-1전	나운동산374-8유	
기정	소로	3	4	4	1,137	4,487	산책로	미룡동4-2유	지곡동430-2유	
기정	소로	3	6	6	376	875	산책로	미룡동48유	나운동산243-3임	
기정	소로	3	8	4	348	1,433	산책로	나운동산243-3임	미룡동6-12전	
기정	소로	3	9	4	489	1,070	산책로	지곡동433-1전	지곡동453유	
기정	소로	3	10	4	185	705	산책로	지곡동465-8도	지곡동453-4유	
기정	소로	3	11	4	195	781	산책로	나운동1195-14도	나운동1200유	
기정	소로	3	12	4	1,068	4,226	산책로	나운동1199유	나운동1202-14전	
기정	소로	3	13	3	874	3,542	산책로	미룡동산242-11도	지곡동430-2유	
기정	소로	3	14	3	244	708	산책로	미룡동산242-5유	미룡동산240-9도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계재 생략”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고시 제2021-4호

##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군산시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 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명칭 :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3. 사업위치 :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일원
4. 사 업 비 : 5,814백만원(국비 4,070, 지방비 1,744)
5.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6년 6개월간)
6.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무궁화문화복지센터(서수면청사)&공공서비스거점공간, 구구팔팔센터
  - 지역경관개선 : 무궁화 테마거리 조성, 서수 공적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등
7. 사업효과 : 서수면 중심지의 정주여건 기반 정비 및 기능 강화

8. 사업 시행자 : 군산시장(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일괄 위·수탁)

9. 기타 문의사항

-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축산과(☎063-454-5892) 및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고시 제2021-5호

## 회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분 시행계획 승인 고시

군산시 회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분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명칭 : 회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3. 사업위치 :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일원
4. 사업비(총괄) : 6,000백만원(국비 4,200, 지방비 1,800)
4. 사업비(금회) : 998백만원(국비 699, 지방비 299)
5.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6. 주요사업내용(총괄)
  - 기초생활기반 : 회현면 복합청사(너나들이쉼터, 회현면청사), 어울림센터, 통학로 정비사업
  - 지역경관개선 : 가로환경정비사업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등

**6. 주요사업내용(금회 승인내역)**

- 기초생활기반 : 어울림센터(구 복지회관 리모델링)

7. 사업효과 : 회현면 중심지의 정주여건 기반 정비 및 기능 강화

8. 사업 시행자 : 군산시장(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일괄 위·수탁)

**9. 기타 문의사항**

-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축산과(☎063-454-5892) 및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